

붙임 1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코드 및 매출액 기준

구 분		주업종코드	개수	규모기준*
합 계			112	
도매 및 소매업	대형마트·백화점	521100, 521911, 521912, 521991, 521913, 521910	6	매출액 1000억원
	직접판매홍보관	525200	1	이하
정보통신업	영화관	921200, 924910	2	매출액 80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콜라텍	921904	1	매출액 600억원 이하
	노래연습장	924903	1	
	실내체육시설	924200, 924302, 924305, 924306, 925308, 924309, 924312, 924313	8	
	놀이공원·테마파크	921903	1	
	독서실·스터디카페	923100, 923101	2	
	기타 스포츠 운영업 (골프장, 스키장 등)	924303, 924304, 924305, 924307, 924308	5	
	PC방	924902, 924904, 924907, 924908, 924909, 924910, 924911, 924912, 924913	9	
	오락실·멀티방 등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연장	921901	1	
	목욕장	930902	1	
	이·미용시설	930201, 930203, 930205, 930207	4	
	결혼식장	930901, 930301, 930302	3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52201, 552202, 552203, 552204, 552205, 552206, 552207, 552208, 552209, 552210	10	매출액 400억원 이하
	식당·카페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7, 552108, 552109, 552114, 552115, 552116, 552117, 552118, 552119, 552123, 552301, 552303, 552305, 552307, 552308, 552309	20	
	숙박업	551001, 551009, 551002, 551010, 551004, 551015, 551005, 551016, 551006, 551017, 551007	11	
교육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551003, 741402, 809001, 809002, 809003, 809004, 809005, 809007, 809009, 809010, 809011, 809012, 809013, 809014, 809015, 809016, 809017, 809018, 809020, 809021, 809022, 921902, 930915, 930921, 940903	25	
부동산업	파티룸	701300	1	

*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20사업연도 매출액으로 판단)

국세청 공고 제2021-14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 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은 6.30까지, 연결법인 및 성실 신고확인대상법인은 7.31.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2021. 3. 10.

국 세 청 장